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27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이철규·강승규·주호영

나경원 • 박성민 • 박상웅

조지연 • 권성동 • 김상훈

유상범 · 엄태영 · 이인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」은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신속한 조성,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설치에관한 규정을 하고 있음.

이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별표 1 제24호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545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4.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